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7462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나62129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7462 판결

전 문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종욱

변 론 종 결 2021. 3. 24.

판 결 선 고 2021.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828,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2018. 11. 2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부동산 분양관련 컨설팅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8. 11. 20. 'D은 원고에게 66,828,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2018. 1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다. D은 2011. 4. 7.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 부동산개발컨설팅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피고 C이 유일한 임원인 사내이사로 있다.

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6. 1. 22.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 부동산개발컨설팅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 C은 2019. 3. 25. 유일한 임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요지

D과 피고 B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피고 C은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피고 B을 설립한 것이고, 위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배후인 피고 C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고 법인격을 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 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가운데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

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과 D은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 C이 사내이사이기는 하지만, 앞서 인정한 법리에 따라 피고 B이 D의 자산을 이전받았다는 등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용되어 실질적으로 두 회사가 동일하다는 점에 관한 주장 및 증거가 없고, D과 피고 C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어 실질적으로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 법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남용에 해당된다는 점에 관한 주장 및 증거가 없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D의 채무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진